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개선 · 시정 요구

제 목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소홀

기 관 명 충청남도, 논산시

내 용

충청남도(○○○○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이 발생 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총4,229개의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1] 충청남도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기 관	계	A급	B급	C급	D급	E급	비고
충청남도	4,229	2,011	1,819	373	23	3	세부내역 붙임참조

※자료근거 : 충청남도 ○○○○과 제출자료

1.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등 업무 관리 소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은 관련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¹⁾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은 월 1회이상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1)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지침」 제4장제4절(안전점검반 구성 및 실시)에 따르면 점검반은 특정관리대상시설별 특성 및 점검 목적에 맞추어 해당분야의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재난 위험시설(D, E등급) 경우에는 반드시 반기별 1회 이상 해당분야(토목, 건축, 전기 등)관련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재난위험시설(D, E등급)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민간전문가 등의 참여 없이 자체 점검반으로만 구성하여 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점검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부서에서 계획만을 수립하고, 실시의 주체는 안전관리부서가 아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발주(감독)부서이거나, 허가부서 등 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바,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 까지 실시한 점검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보고되어 객관성 결여 및 형식적인 운영에 따른 점검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에 있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부서에서는 대상 시설의 수가 많고, 본연의 업무 수행 외에 추가적으로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실정에서 전문 인력 및 시간의 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점검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안전점검의 취지에 있어서는 재난 및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에 목적이 있는 필수적인 사안으로 민간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2] 충청남도 재난위험시설 현황

시설명	위 치	등급	현황		고시일 (지정일)
			건립년도	규모	
○○교	예산군 ○○면 ○○리	D	1981	L=66.0m, B=7.6m	`16.2.23.
○○교	예산군 ○○면 ○○리	D	1972	L=22.0m, B=9.8m	`16.9.12.
○○교	천안시 ○○면 ○○리	D	1971	L=99.2m, B=7.5m	`14.9.11.
○○시장(A~C동)	천안시 ○○시장 ○길 ○○	E(A동)	1969	3층(3동) 1,606㎡ 라멘조	`07.9.18.
		D(B,C동)			
○○○교	천안시 ○○면 ○○리	D	1987	L=22m B=7.0m	`16.1.11.
○○교	논산시 ○○면 ○○리	D	1969	L=11.2m B=6.2m	`15.10.20.
○○육교	계룡시 ○○동 ○○○-○	D	1983	L=30m B=10m	`15.10.16.
○○교	공주시 ○○면 ○○리	D	1993	L=144m, B=7m	`16.8.1.
○○교	보령시 ○○면 ○○리	D	1988	L=24.0m B=4.5m, DB-13.5	`14.11.14.
○○○교	보령시 ○○면 ○○리	D	1988	L=26m B=4.5m, DB-13.5	`16.5.13.
○○○교	보령시 ○○면 ○○리	D	1982	L=21m B=6.0m, DB-13.5	`16.5.13.
○○○연립(민간)	서산시 ○○동 ○○○-○ 번지외1필	D	1979	2층(12호) 696㎡, 조적조	`01.10.10.
○○천 제○호 ○○교량	서산시 ○○동 ○○○-○	D	1983	L=80m B=4.0m	`16.3.17.
(구)○○교	당진시 ○○동 ○○○	D	1987	L=8.0m, B=4.9m	`15.7.7.
○○○교	금산군 ○○읍 ○○리	D	1993	L=40.0m, B=24.0m	`14.1.13.
○○아파트(민간)	태안군 ○○리 ○○○-○	D	1989	5층(64호), 3,257㎡	`10.12.17.
부여○○○○○○○○(민간)	부여군 ○○읍 ○○리 ○○○-○	D	1968)	지상 2층, 1,069㎡	`15.11.10.
(구) ○○회관	당진시 ○○로 ○○○	D	1985	1,141.66㎡	`16.10.12.
○○주유소 절개지(민간)	금산군 ○○면 ○○○-○○	D	절개지	L=40m H=10m	`98.7.3.
○○아파트 웅벽(민간)	금산군 ○○면 ○○○-○	D	1993	L=85m H=5.6m	`12.11.30.
○○○교	서천군 ○○읍	D	1987	L=80.3m B=6.5m, DB-13.5	`16.6.13.
○○교	홍성군 ○○면 ○○리 ○○○-○	E	1970	L=33m B=5m	`15.12.9.
○○○교	예산군 ○○면 ○○리	D	1984	L=45.9m B=5.5m, DB-13.5	`14.12.23.
○○아파트 웅벽	천안시 ○○구 ○○읍 ○○○-○	E	1995	L=33m H=7m, T=0.6m	`16.10.27.

※자료근거 : 충청남도 ○○○○과 제출자료

2. 중대재해사고 발생현장 특정관리대상시설 미 지정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지침」 제7절 4. 건설공사장 중 D등급 지정 대상은 공공 및 민간시행 건설공사(토목은 총공사비 100억 이상, 건축은 총공사비 50억 이상) 중 공사착공 이후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D등급으로 지정관리하고, 지정 후 1년간 무재해 발생 시 C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관서(논산시)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공사 착공 이후 1명이상

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사망사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D등급으로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하여야 함에도, 시설관리 부서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부서에 통보되지 않아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누락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3] 중대 재해사고 발생현장 특정관리대상 미지정 현황

구분	공 사 명	총공사비 (백만원)	용도	층수 (연면적)	비고
논산시	논산○○ ○○시설 신축공사(건축공사)	8,537	판매시설	지하1,지상2층 6,513.2㎡	사망
	논산 ○○○○ ○○○ 신축공사	53,461	공동주택	지하1,지상20층 34,872㎡	사망

※자료근거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업무협조 요청 회신자료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

[개선] ① 각 시·군을 포함하여 안전관리부서로 하여금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② 공공 및 민간시행 건설공사(토목은 총공사비 100억 이상, 건축은 총공사비 50억 이상)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논산시장은

[시정]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D등급)로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특별 관리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